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광성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제25조제2항에서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재정 등의 지원은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6조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와 통일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,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
현행의 사업자 외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
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추가하고 잘못된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
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
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